

가족 돌봄 휴직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 양육 등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제도입니다.

지원기간

- 연간 최대 90일 까지 분할 사용 가능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 가능/ 해마다 반복 사용 가능)

지원내용

- 휴직보장(임금별도 지급 불가, 단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
※ 연차휴가일수 = 본인의 연차휴가일수 × 실제근무일수 / 총 소정근로일수

지원방법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돌봐야 하는 가족의 인적사항과 사유 등을 적은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

여기서 잠깐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사업주가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단, **4가지 제한 사유**에 의해 사업주는 휴직 제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신청자 외에도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근로자의 휴직이 사업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지원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